

또한, 시행령 제146조의7를 개정하여 차령이 3년이상 된 자동차가 과세기간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에는 연간일수를 분모로 하여 연세액을 일할계산하던 것을 당해 자동차의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기분의 총일수를 분모로 하여 당해기분 세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과세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예를 들은 1995.12.20 최초로 신규등록한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2001.11.11일 양도양수한 경우의 자동차세 일할계산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양도자 : $150,000\text{원} \times 134/184 = 109,230$ (단수절삭)
- 양수자 : $150,000\text{원} \times 50/184 = 40,760$

2.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1) 배 경

면허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음으로 누리는 혜택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세금으로서 신규면허를 받을 때에 징수하고, 허가가 2년이상 유효할 경우 매년 당해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면허와 달리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시 고율(3~5%)의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그 후 매년 일정액의 면허세를 계속 과세하는 것은 면허세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자동차에 대한 세금의 종류가 많고 부담이 크므로 취득·보유단계의 부담은 완화하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비추어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면허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2) 개정개요

개정된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에 규정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